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외동포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재외동포청 정원 10명(4급 3명, 5급 2명, 6급 2명, 7급 2명, 9급 1명)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감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「공무원임용령」 개정(2023. 8. 30.)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을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8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 중 10명(4급 3명, 5급 2명, 6급 2명, 7급 2명, 9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별표 1 중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 “5”를 “4”로 하고,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 4 다음에 “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감사관 4”를 신설하며, “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·기술서기관 3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(생 략)	제9조(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 중 <u>10명(4급 3명, 5급 2명, 6급 2명, 7급 2명, 9급 1명)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(제9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	<u>5</u>	<u>4</u>	-1
<u>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</u> <u>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감사</u> <u>관</u>	<u><신 설></u>	<u>4</u>	+4
<u>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</u>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</u>	<u>3</u>	<u><삭 제></u>	-3
·	·	·	
·	·	·	